

公正去來法



李 奎 億

〈韓國開發研究院・先任研究委員〉

I. 公正去來法의 制定背景

우리 経済는 지난 60年代 이래 政府主導의 의
욕적인 開發戰略을 추진해 온 결과 外形的으로는 빠른 成長을 계속하여 왔으나, 独占企業의
量產으로 인한 經濟力의 集中, 傳統的이며 古踏的인 流通 및 去來秩序의 溫存, 偷理性이 결여
된 自由방임적인 企業行態등 經濟의 質的 水準은 여전히 後進性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70年代에 접어들면서 經濟의 質的 改善을 도모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가 절실
하게 요구되었으며, 이와 함께 1973~74年에 걸친 第1次 石油波動의 여파에 따른 物価暴騰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해지자 정부는 1976年 「物価
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이하 「物価安定
法」)을 制定・施行하게 되었다.

그러나 「物価安定法」은 独寡占品目에 대한 最
高價格 指定, 價格表示, 公共料金의 規制, 物資의
緊急需給調整機能, 不公正去來 및 競爭制限
行為의 禁止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價格
規制와 競爭促進이라는 상호 모순된 기능을 함
께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物価安定法」은
그 후 운영과정에서 당초 목적인 独寡占의 폐단
시정을 통한 經濟的 民主主義의 창달이라는 本
来的 機能보다는 미시적인 直接的 價格規制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物価安定法의 運用에 있어서 이러한 政府의
計劃 및 規制機能이 강화되고, 民間經濟에 대한

간접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市場機能의 상실,
二重價格의 形成, 生產動機 誘引의 미흡 등 여러가지 폐단이 점차 露程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政府도 종래의 官主導 開發戰略은 그동안의 급격한国内外의 여건의 변화에 따라 限界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民間主導의 自律의 經濟体制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즉 우리 經濟가 小規模 閉鎖經濟로 부터 大規模 開放經濟로 이행하게 됨에 따라 政府主導下의 計劃經濟는 民間主導의 市場經濟로, 独寡占의 폐해규제는 원인규제로, 直接的・事前的 價格規制는 間接的・事後의 價格規制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지난 날의 經濟力集中을 통한 資本蓄積보다는 効率性에 입각한 企業成長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經濟秩序法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난 80年末 기준의 「物価安定法」은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이하 「公正去來法」)로 발전적으로 대체되어 1981年 4月부터 본격적으로 施行되었다.

II. 公正去來의 内容

公正去來法은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을 금지하고, 과도한 經濟力의 集中을 방지하며, 부당한 共同行為의 不公正去來行為의 規制를 통해公正하고 자유로운 競爭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企業活動을 조장하고 消費者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國民經濟의 均衡的 發展을 도모하려

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市場支配的 地位의 남용금지

「公正去來法」의 내용을 보면, 첫째, 独占弊害規制로서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을 금지하고 있다. 즉 이미 形成된 独占은 인정하되 그弊害만은 規制하겠다는 것으로 市場支配的事業者の 價格濫用行為, 價格·販売條件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生產 및 販売의 調節, 他事業者活動의 부당한 방해, 他企業의 進入를 방지함으로써 市場에서의 独占力を 유지하기 위한 施設의 新·增設行為, 其他 競爭의 實質적 制限 및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價格濫用行為의 금지는 價格面에 있어서 独占企業의 부당한 市場行態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物價安定法」에 의한 物價억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價格規制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價格의 同調的 인상금지

둘째, 寡占의 弊害를 規制하기 위해 價格의 同調的 引上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價格濫用禁止對象 事業者를 제외한 市場支配的 事業者 중 상위 2個業體 이상이 原價 등의 变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個月 이내에 價格을 亂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 價格引下命令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價格의 同調的 引上 금지의 목적은 事業者간의 默示的 談合이나 意識的 平行行為(Conscious parallelism)를 規制하기 위한 것이나 그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運用의 妙를 살리지 못하면 價格管理의 수단으로 변할 가능성 또한 많다고 하겠다.

企業結合의 規制

셋째, 独占의 原因規制의 조치로서 競爭을 實質적으로 制限하는 企業結合을 規制하고 있는데, 여기서 企業結合이란 任員兼任, 合作投資, 施設의 新·增設行為까지 포함하는 広意의 企業結合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이미 独占化한 產業은 어쩔수 없지만, 더 이상의 独占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独占化(monopolization)의 禁止

條項으로서 「一定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적으로」制限하는 企業結合을 規制하고 있다. 이에 따라 同業者간의 企業結合(水平結合)과 生產 및 流通에 있어서 系列關係에 있는 企業間의結合(垂直結合)은 規制되지만, 별개의 市場에 속한 企業間의結合(複合結合)은 허용되고 있다. 複合結合의 허용은 經濟力의 集中을 가속하여 장기적으로는 競爭構造의 存立 자체를 위협할可能性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적절한 規制가 앞으로의 課題로 남아 있다.

부당한 共同行為의 규제

네째, 事業者間의 부당한 共同行為를 규제하기 위해 價格·販賣條件·生產 및 販賣數量·販路·施設·規格등에 관한 共同行為(카르텔)를 登錄하도록 하고 있다. 事業者間의 共同行為는 그 목적이 企業間의 結合利潤(joint profit)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인므로 独占과 같은 效果가 있기 때문에 「公共의 利益」에 반하여 「一定한 去來分野」의 競爭을 「實質적」으로 制限하는 共同行為는 원칙적으로 禁止하되, 不況극복이나 產業合理化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選別的으로 허용도록 하고 있다.

事業者團體의 活動規制

다섯째, 事業者團體의 活動을 制限하고 있는 바, 事業者團體의 活動이 부당한 共同行為를 포함하고 있거나 당해 事業者團體의 構成事業者數를 制限하거나 構成事業者의 事業內容 및 活動을 부당하게 制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우리 나라 대부분의 事業者團體의 활동이 카르텔의 機能에 중첩이 두어져 明示的·默示的인 競爭制限行為를 자행하여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事業者團體 活動範圍의 限界를 설정한 規定이라 할 수 있다.

再販價格維持行為의 금지

여섯째, 生產者가 流通過程에서 中間商人들이 받아야 할 價格을 미리 결정하는 이른바 再販價格維持行為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再販價格維持行為는 中間流通段階에서의 競爭을 制限하기 때문에 原則적으로 禁止하나,

出版物과 一般消費者들의 日常使用品으로서 品質의 同一性이 일一般적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으며, 市場에서 자유로운 競爭이 행해지고 있는商品에 대한 個別的 再販売価格維持行為는 허용하고 있다.

不公正去來行為의 금지

일곱째, 市場去來秩序의 確立과 消費者保護의 직접적 수단으로서 不公正去來行為를 금지하고 있는 바, 不公正去來行為로는 부당한 거래거절, 去來條件등의 차별적 취급, 集團排斥 및 集團의 差別取扱, 差別代價, 부당廉売 및 不當高價買占, 부당한 고객유인, 不當表示, 不當한去來强制, 우월적 지위의 남용, 不當排他條件附去來, 허위·과장광고 및 기만행위의 12가지 類型을 구체적으로 指定·告示하고 있다. 不公正去來行為 類型에서 買占壳措行為를 제외한 것은価格의 上昇이 예상되는 時点에서 많은 物品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資本主義經濟下에서 충분히 용납될 수 있는 經濟的 動機이며, 壳措 즉 販売를 거절하는 것은 거래거절 금지조항에 의해規制되기 때문이다.

国内市场秩序의 보호

마지막으로 우리 經濟의 開放化 추세에 따라 国内市場秩序의 保護를 위해 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부당한 共同行為 및 不公正去來行為를 포함하는 國際契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国内市場秩序의 보호와 아울러 国内企業의 对外交涉力 增大效果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여기서 말하는 國際契約이란 原資材 및 資本財 輸入契約을 제외한 借款契約, 合作投資契約, 技術導入契約, 輸入代理店契約, 長期輸入契約등 모든 國際契約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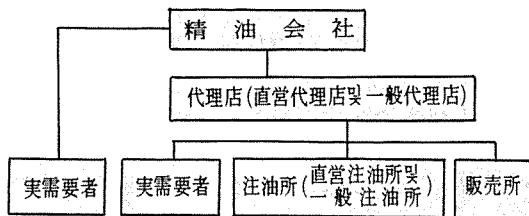
III. 石油流通構造의 現況과 公正去來法

우리 나라의 石油流通構造에 관하여는 「石油協會報」1982年 8月号에서 이미 상세히 研究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특징만 간단히 언급하

고자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石油流通機構로는 生產者인 5個 精油會社와 都売機能을 담당하고 있는 105個所의 代理店, 小賣機能을 담당하고 있는 약 1,560個의 注油所와 販売店이 있는데, 代理店은 精油會社 直營代理店과 一般代理店으로, 注油所는 代理店 直營注油所와 一般注油所로 구분된다(그림-1 참조). 1981年的 경우 国内石油總

〈그림-1〉 우리 나라의 石油流通機構



流通物量중 精油會社의 直売가 69.6%, 代理店을 통한 販売가 3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代理店의 対實需要者 直売分 12.0%를 제외하고 나면 注油所 및 販売店을 통한 去來는 전체 石油流通量의 18.4%에 불과하다. 그러나 精油會社 및 代理店의 直売分은 거의가 產業用인 重質油로서 B-C油의 경우 精油社 直売가 전체 물량의 85%를 넘고 있는 반면, 輕質油의 경우 注油所 및 販売所를 통한 거래가 전체의 39.5%이며, 특히 휘발유와 燈油는 거의 90%정도가 注油所 및 販売所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表-1 참조).

精油會社 혹은 代理店과 實需要者間의 直売에 의한 去來에 있어서는 兩者가 대등한 交涉力を

〈表-1〉 主要油種別 流通經路

(단위 : %)

	精 油 会 社		代 理 店			
	直 売	代 理 店		直 売	注 油 所	販 売 所
		直 営	一 般			
揮發油	3.0	30.0	66.6	6.7	87.9	2.5
프로판	7.9	7.0	85.1	13.4	2.6	76.1
부 탄	21.9	0.8	77.3	49.9	27.8	-
灯 油	4.5	17.5	78.0	8.5	43.0	44.0
輕 油	39.4	16.2	44.4	18.6	35.9	6.1
B-C油	85.5	3.7	10.7	12.5	0.2	1.8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産業政策的 次元에서 政府가 流通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公正去來政策上 問題가 되는 것은 代理店 및 注油所를 통한 판매일 것이다.

石油流通業은 이미 지난 81年 公正去來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流通組織 및 去來關係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즉 既存의 精油會社와 代理店間의 계약에는 많은 不公正去來行為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公正去來委員會는 代理店契約의 대폭적인 修正을 명령하였는데(去來 333-523호) 그 내용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再販売価格維持行為 條項의 폐지 : 「代理店과 小売店의 製品價格을 精油社가 告示한 價格으로 하며, 代理店은 산하 소매점이 精油社가告示한 가격을 준수할 것을 보장하는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再販売価格維持行為에 해당하므로 이를 폐지.

② 販売地域制限의 완화 : 「代理店은 계약서에서 정한 地域외에서 製品을 販売·分配 또는 취급하지 못한다」고 하는 條項은 不當拘束條件附去來에 해당하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原則이나 既存의 流通秩序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地域을 代理店의 주된 販売地域으로 한다」라고 文句를 다소 수정하여 販売地域制限을 완화함.

③ 優越의 支位의 濫用 制限 : 白紙어음의 차입, 販売網廃止의 事前承認, 物의設備의 양도 제한, 債務負擔 및 合併의 事前同意, 体廢業의 事前承認, 販買義務量 미달시 손해배상등의 條項은 精油會社의 손해발생만을 고려한 優越的地位의 濫用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制度를 철폐하거나 事前承認制를 事前通告制로 变更함.

④ 排他條件附去來와 代理店契約期間의 단축 : 契約書上에는 「代理店의 契約期間중 he 精油社 製品의 取扱 및 販売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排他條件附去來에 관한 規定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폐지할 경우 기존 販売組織網에 있어서 중대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이러한 排他條件附去來는双方의 合意에 의한 것이므로 계속 허용하되 그 대신 10年으로 되어 있던 代理店契約期間을 1年으로 단축하도록 조치.

이러한公正去來委員會의 결정은 그 동안 누적되어온 石油流通業에 있어서의 여러 問題點을

일시에 해결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現実과 이 상을 어느 정도 감안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措置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다음 章에서는 石油流通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長期的인 제반 조치를 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한다.

IV. 公正去來政策的 側面에서 본 石油流通業의 課題

1. 流通段階別 販売価格

앞에서 石油流通에 있어서 再販売価格維持行為는 이미公正去來委員會의 권고에 의하여 시정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까지 石油類의 流通段階別 販売価格은 政府의告示價格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民間企業에 의한 再販売価格維持行為는 아무런 実効性이 없었으므로 그 존속 여부가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으나, 장차 石油價格自律化에 대비한 조치라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石油類價格은 수차례 결친 石油波動으로 폭등하는 과정에서 政府는 流通段階別 利潤幅을 가능한 한 줄임으로써 石油類價格引上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告示價格制度를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石油類價格이 安定을 되찾고, 또한 이러한 油價安定趨勢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이 기회를 통하여段階의 油價自律化를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去來段階別 石油類價格의 自律化措置의 전제조건으로 먼저 生產段階에서의 自由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아직까지 動資部長官의 許可事項으로 되어 있는 石油販賣業의 許可를 더욱 자유화하여 施設 및 安全要件만 충족한다면 누구에게라도 石油販賣業을 허가함으로써 流通段階에서의 자유로운 競爭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81年 3月 動力資原部의 石油販賣業許可自由化措置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이러한自由화의 폭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全國均一告示價格制

현재 石油事業法 15條의 규정에 의거하여 全

国均一輸送費適用地域인 서울·仁川등 43個地域에서는 모든 製品의 告示価格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 외의 地域에 대해서는 輸送費의 차이를 감안한 차등적인 販売価格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輸送費가 서로 다른 地域間에同一한 価格을 적용하는 것은 일종의 価格差別이며, 이를 배제하고 또한 地域別需給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均一輸送費地域 내에서도 輸送費의 차이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해 地域間石油需給上의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장차의 油価自律化施策과 관련하여 輸送費의 계산과 価格에의 반영은 民間 精油会社 및 流通業者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石油販売業의 許可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1981年 3月 動資部의 石油販売業許可自由化措置 이후 全國的으로 注油所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그 동안 엄격하게 규제되어온 石油販売業의 許可로 石油販売業者の 수가 크게 제한되어 石油販売業이 利权化한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이러한 注油所 수자의 급속한 증대는 石油販売業이 그 동안 他業種보다 상대적으로 収益性이 높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石油販売業의 自由化를 계속 추진함으로써 石油販売業에서의 競争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石油流通業者の 난립에 따른 위험성의 증대 및 販売業의 零細化를 방지하기 위해 施設 및 安全要件 등을 강화함과 동시에 自動車整備, 点検 등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石油 販売業의 機能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流通段階의 단축

현재 石油類 中間流通段階은 代理店 및 注油所, 販売所등 2段階로 되어 있으므로 流通段階를 단축함으로써 이에 따른 중간 마진幅을 줄여 消費者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政府에서는 流通段階의 단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다. 물론 현재로서는 代理店은 단순한 輸送機能만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石油流通에 있어서 기여도는 크게 높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政府가 직접 개입하여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판단된다. 불필요한 中間流通段階의 존재는 消費者의 부담도 가중시키지만, 生產者에게도 長期的으로는 좋지 못한 效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民間 生產業者 및 流通業者들이 스스로 새로운 販売方式을 개발하거나 중간 유통가구의 機能強化를 위한 방안을 점진적으로 장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政府가 流通段階의 단축을 위해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면 불필요한 流通上의 혼란만 결과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現實과 동떨어진 새로운 流通方式을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流通段階에서 또 다른 国家的 資源의 낭비 마저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流通系列化와 生産 및 流通의 分離

政府는 81年 3月 精油会社들에 의한 不公正去來行為의 방지와 流通段階에서의 競争促進을 위해 精油会社의 直營代理店新設과 기존 直營代理店의 直營注油所新設을 금지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1차적으로 精油会社나 그 直營代理店이 代理店이나 直營注油所를 통해 낮은 価格으로 石油類를 市中에 投売하는 価格濫用行為나 差別的인 去來條件등이 不公正去來行為를 방지하고, 長期的으로는 生產者에 의한 流通의支配를 지양함으로써 流通段階에서의 競争을促進하려는데 그目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生產과 流通의 分離政策은 장래 石油流通業에서의 競争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政府의 措置가 어떤 法律을 근거로 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조치가 취해진 후 精油会社들은 새로운 直營代理店을 新設하는 대신既存 代理店을 대거 引受함으로써 政府의 조치는 사실상 白紙化되고 말았다. 政府가 만약 生產과 流通의 밀착에 따른 問題點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分離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公正去來法上의 企業結合規制條項이나 其他 関聯法規에 의거하여 이를 原狀態로 회복시키는 방

안도 겸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精油会社와 代理店간, 代理店과 注油所간의 不平等關係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精油会社와 代理店간의 불평등 계약은 이미 어느 정도 시정된 바 있으며, 代理店과 注油所간의 불평등 거래관계도 이에 따라 상당히 시정되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명목상의 不平等關係의 시정에도 불구하고構造的으로 볼 때 相對的 强者인 供給者와 購買者간의 거래에서 대등한 去來關係가 形成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不平等 去來關係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代理店 및 注油所의 組織化를 통한 購買者측의 交渉力 增大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中間流通業者の 組織化를 통한 団體行動은 供給者와의 去來에서는 対等한 去來關係 定立에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中間流通業者が 供給者와의 위치에 있는 一般消費者들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競争制限의 共同行為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流通段階별로 供給者와 購買者간의 대등한 去來關係를 定立하기 위해서는 团體結成, 共同行為 등 人為의 노력보다는 長期的으로 排他條件附去來, 拘束條件附去來 등 기

존의 流通系列化 현상을 탈피하고, 자유로운 競争体制를 도입함으로써 生產者段階에서부터 消費者段階에 이르기 까지 각 流通段階에 있어서의 競争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지금까지 公正去來政策의 側面에서 石油流通產業의 問題點과 앞으로의 課題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政府의 石油流通政策은 過度한 規制와 기존업자의 보호경향이 강했으나, 1981年부터 조금씩 自由化의 폭을 넓히며, 競争体制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民間石油流通機構도 自意半他意半으로 이러한 자유화 추세에 조금씩 적응하여 왔다. 다른 產業과 마찬가지로 石油流通業 또한 政府의 지나친 規制와 既存 業權의 보호는 長期的으로 流通機構의 위축을 초래함으로써 石油流通產業의 發展을 저해하게 된다.

최근 2년간의 多방면에 걸친 經濟的 自律化措置는 앞으로도 계속될 추세이며, 石油流通業도 이러한 추세에 보다 신속히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어느정도 존속하고 있는 政府의 認·許可등의 規制나 民間業體에 의한 私的制限은 불원간 폐지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에 대비한 각 石油流通機構의 새로운 자세 정립이 요구된다 하겠다.*

□ 産油国動向 □

OPEC 81年 総石油歳入 前年比 9% 減少

OPEC會員國들의 昨年度 総石油歳入은 產油量의 減少로 1980年度의 2,785.9億弗에서 2,530.7億弗로 떨어졌다고 OPECNA通信이 12월 1일 報道했다.

OPECNA通信의 이같은 發表는 오는 12月 19日 비인에서 열리는 次期 OPEC 総会에서 會員국간에 상당한 異見을 보이고 있는 油価 및 產油量 問題가 원만히 解決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發表된 것으로 分析되고 있는데 1980年과 1981年的 OPEC 石油輸出은 각각 2,289萬b/d와 1,843萬b/d인 것으로 알려졌다.

主要產油國의 國別 石油歳入 實績을 살펴보면 이라크가 1980年的 261.4億弗(石油輸出: 246萬b/d)에서 1981年에는 103.9億弗 (67.7萬b/d)로 가장 극심하게 떨어졌으며 이란은 134.6億弗(79.67萬b/d)에서 86.2億弗(81.59萬b/d)로 石油輸出은 增加했으나 石油歳入은 역시 減少하였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最大產油國인 사우디는 石油輸出이 1980年的 922萬b/d에서 1981年에는 902萬b/d로 줄었으나 石油歳入은 1,020.1億弗에서 1,132.2億弗로 增加하였다.